

의안번호	2215899
의 퇴 인	김남희의원
회 답 일	2026. 1. 21.
추계번호	26C0074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의2(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·운영)	질병관리청장은 제7조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수립·시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염병감시정보원(이하 “정보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함(제1항)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(제3항) 1. 국내외 감염병 정보의 수집·분석 등 감염병 감시에 관한 정보 또는 기술의 지원 2. 감염병 예방·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·분석 시스템 구축 및 유지·기능개선·관리·교육·상담·정보보호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. 감염병 예방·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·통계 관리 등 4. 내성균 관리를 위한 항생제 사용 감시 및 예방·관리 사업 운영에 관한 업무 지원 5. 국외감염병 관련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. 감염병 예방·관리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,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7. 감염병에 관한 대국민 교육·홍보 8. 감염병 정보의 인공지능 활용 지원 9. 감염병 신고·감시 등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지원 10. 그 밖에 정보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11. 다른 법령에 따라 정보원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12.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정부는 정보원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(제4항) 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7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7조의2(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·운영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·운영(안 제7조의2)

- 개정안은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수집·분석하고 국내외 감염병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·운영 근거를 마련하고, 정부가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, 개정안에 따라 감염병감시정보원이 설립되고 운영될 시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
- 다만, 현시점에서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 등과 관련한 기본계획이 존재하지 않아, 조직규모를 추정하기 어렵고 안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내용 또한 광범위하여 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예산을 가정하여,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
 - － 참고로 개정안 제7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라 감염병감시정보원이 수행하게 될 업무와 관련한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음

【표】 감염병감시정보원 수행 예정업무와 관련한 예산편성내역(2025년 기준)

(단위: 백만원)

안 제7조의2 각 호		세부사업명	예산현황		
			세부사업	내역사업	
1	국내외 감염병 정보의 수집·분석 등 감염병 감시에 관한 정보 및 기술의 지원	질병감시 전략관리	570	274	○ 질병감시 정보수집 및 제공: 274
		검역관리	12,694	3,766	○ 검역시스템 구축·운영: 2,860 ○ 공항만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: 906

안 제7조의2 각 호		세부사업명	예산현황		
			세부사업	내역사업	
2	감염병 예방·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·분석 시스템 구축 및 유지·기능개선·관리·교육·상담·정보보호 등 운영에 관한 사항	감염병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	3,078	3,078	○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: 3,078
3	감염병 예방·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·통계 관리 등	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*	22,110*	6,610*	○ 감염병 관리 지원 : 6,610 - 감염병 예방행태 실태 조사(180) - 감염병실태조사(150)
4	내성균 관리를 위한 항생제 사용 감시 및 예방·관리 사업 운영에 관한 업무 지원			2,355	○ 국가항생제 내성관리 대책 추진: 2,025 ○ 의료관련감염 다제내성균 실험실 조사: 330
5	국외감염병 관련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	질병관리 국제협력	827	827	○ 국제협력 기반구축: 289 ○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: 148 ○ 감염병대응 글로벌공조 강화: 390
		감염병관리 국제부담금(ODA)	2,045	2,045	○ WPRO 감염병관리 국제부담금: 2,045
6	감염병 예방·관리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, 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	감염병 대응 인력 역량 강화	2,204	2,204	○ 감염병 전문가 교육: 1,348 ○ 역학조사관 교육: 856
7	감염병에 관한 대국민 교육·홍보	질병관리 국민소통	630	277	○ 디지털 홍보: 277
		감염병 예방관리 및 지원*	22,110*	6,610*	○ 감염병 관리 지원 : 6,610 - 대국민 손씻기 홍보: 289

안 제7조의2 각 호		세부사업명	예산현황	
			세부사업	내역사업
9	감염병 신고·감시 등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지원			8,493 ○ 주요감염병 표본감시: 1,356 ○ 수인성 식품매개 및 호흡기감염병 관리: 197 ○ 병원기반형 감시체계 구축: 1,201 ○ 의료관련 감염관리 및 감시체계 운영: 5,739
8	감염병 정보의 인공지능 활용 지원	해당없음	—	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&D 예산으로 지원 (총 50억원) - 2개과제 (감염병대응분과, 검역관리분과)×과제당 25억원 지원=50억원
합 계			44,158	29,929

*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 세부사업(안 제7조의2제3호~4호, 제7호 및 제9호), 합계산출 시 중복예산 제외
 자료: 질병관리청

- 따라서 개정안은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사항을 현 단계에서 파악하기 어려워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